

契約者 配當制度에 대한 提言

—新設社의 立場을 中心으로—

金 寬 治

(太平洋生命 常務理事・代表計理人)

◀ 目 次 ▶

- I. 머리말
- II. 우리나라 契約者 配當制度의 施行 現況
및 問題點
- III. 外國의 制度
 - 1. 英 國
 - 2. 美 國
 - 3. 日 本
- IV. 契約者 配當制度에 대한 提言
- V. 맺는말

I. 머리말

生命保險은 주로 長期間에 걸쳐 이루어지는 契約이다. 그래서 保險料의 算出은 短期間에 不規則의인 變動에 의하여 不足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程度의 安全性을 감안한 長期的인 “推定統計的 方法(Stochastic Methods)”에 의한 豫定死亡率, 豫定事業費率, 豫定利率등을 使用하여 “收支相等의

原則”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現在 “大數의 法則”의 적용범주에 들어간 既存의 生保社들은 최근에 와서, 大部分 經營의 堅實性을 確保하고 있으므로 年度末 決算을 행하면 資産이 負債를 超過하여 利益金이 發生하고 있다. 이러한 利益金을 契約者에게 配當하는데 있어서 그 割當方法을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發生要因을 利源別(死差, 利差, 費差)로 分析한 후, 配當의 基本條件이라 할 수 있는 公平性, 彈性性, 實用性, 大衆性 등을 고려하여 矛盾되는 部分이 없도록 調和내지는 均衡을 이루어 配當하는 것이 通常的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契約者配當의 始初를 살펴보기로 하자. 生保業界가 損失을 보면서도 豫定利率과 公金利와의 현격한 차이로 生保商品의 競爭力回復과 解約에 따른 資金流出의 防止를 위하여 임시방편적으로 導入된 特別配當制(1965年度)와 確定配當制(1978年度)는 본래의 契約者配當과는 性格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說明은 접어 두기로 한다.

本格的인 契約者配當은 1984년부터 시작된 死

差配當의 實施가 그 嚆矢라 할 수 있다. 이는 當時의 業界의 綜合的인 損益은 損失狀態였지만 死差益 規模가 엄청나게 크고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消費者 要求가 강력해짐에 따라 本格的인 配當導入 이전에, 死差益을 우선 還給해 주기 위하여 導入된 것이다.

이어서, 1984年 3월에 와서는 責任準備金을 純保險料式으로 積立하고도 利益이 發生하는 會社가 나타나고, 특히 1988年度를 前後한 株式市場의 活況은 全 會社의 利益發生을 가져다 주었다. 그럼으로써 生保社들은 内部留保額이 充實하게 되는 등 契約者配當 與件이 完全히 갖추어지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本格的으로 配當을 實施하게 되었다.

여기서, 1980年代 後半에 金融市場 開放政策의 일환으로 設立된 新設生保社들은 生保業界의 特性上 事業初期에 基礎事業費用의 投資가 必然의이므로 莫大한 費差損을 營業開始後 3~4年동안 繼續發生시켜 綜合缺損을 보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既存生保社와 同一한 方法, 同一한 水準의 配當을 實施함으로써 장래의 經營成果에 대하여 相當한 疑問이 提起되고 있다.

특히, 新設社들은 缺損金의 一部를 移延處理하고 있어 名目上의 缺損을 낮추고 있으나, 이는 事業開始 5年後부터는 다시 償却을 하여야 하는 負擔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新設社들은 責任準備金의 積立水準의 過多, 費差損에 따른 損失金의 累積 現狀, 移延資産 償却資金의 確保 未洽등 將來經營上의 不實化 要因을 안고 있는 不完全한 狀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契約者配當은 配當대로 施行해야 하기때문에 심각한 問題를 던져주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配當制度의 施行現況 및 問題點과 外國의 制度 등을 알아 보고 深刻한 問題로 經營의

不實化가 豫想되는 新設社들에 대한 配當制度를 어떻게 시행해야 할지를 提言해 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契約者 配當制度의 施行 現況 및 問題點

우리나라 契約者配當의 歷史는 앞에서 약간言及하였듯이 1966年 特別配當, 1978年 確定配當이 있었으나, 契約者配當의 性格을 띤 最初의 配當은 1984년부터 實施한 死差配當이 그 嚆矢이다. 當時 生保業界는 綜合損益에서는 損失狀態였지만 死差益이 크고 또한 每年 增加하는 趨勢로서 死差益 還給 壓力이 거세어져서 本格的인 配當導入 이전에 死差益을 우선적으로 配當 還給하기 위하여 施行되었으며, 이는 危險保險料의 一定率을 配當하는 形式으로 業界 共同의 義務配當이었다.

이 配當을 實施한 當時(1984年 3月 基準) 業界의 損益狀況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當期 損失 496억원, 累積損失 913억원, 死差益은 412억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1986年度에 이르러서 비로소 株式 및 不動產 市場의 活況을 背景으로 利益이 發生하기 시작하여 이것이 每年 繼續 이어짐으로써 社內 留保金額이 充分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契約者配當 實施與件이 充足되어 本格的인 契約者配當(死差配當, 利差配當, 長期維持特別配當) 時代가 開幕되었다. 물론 配當 初期에는 “先 契約者配當準備金의 積立, 後 配當實施” 라는 配當原則이 잘 지켜지지 않았으나 利益이 發生하게 되면 당연히 利益金의 範圍內에서 配當實施라는 本格的인 配當이 業界 最初로 實施되었다는 점에서 큰 意味가 있었다고 하겠다.

〈丑-1〉

既存社の 年度別 損益状況

(單位: 億圓)

年度別 損益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當 期	△ 480	△ 496	△ 573	△ 692	16	1,125	1,803	625	503	613
累 積	△ 450	△ 913	△ 1,493	△ 2,217	△ 2,183	△ 1,045	731	1,335	1,749	1,948

資料: 保險監督院刊, 1991年度 保險統計年鑑

1990年度에는 從前의 事業年度方式에서 나타난 公平性의 問題點을 補完하기 위하여 保險年度方式으로 變更하였다. 1991年度에는 既存社와 1988年度부터 最近까지 設立된 新設社등 모든 生保社가 最小 義務配當을 實施하도록 하였고 配當前 利益金이 發生하지 않은 會社에 대해서 擔保力 確保基準을 設定하였다. 그리고 死差, 利差配當은 一定範圍內에서 自律配當을 實施토록 하였으며, 1992年度の 契約者配當 施行方向인 “契約者配當準備金積立 및 配當에 關한 指針 改正”(財務部 生保 22330-30 '92.3.31)을 要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利差配當

- 對象契約: 2年以上 維持된 有效한 保險契約
- 利差配當率: 利差配當 基準率 - (保險商品別 豫定利率 + 確定配當率)
- 配當金額: 前 保險年度末 解約還給金式 保險料積立金 × 利差配當率
- 利差配當 基準率: 一般保險 10~12%, 脫退率適用保險 10~11%, 從業員退職積立保險 10~10.5%

② 長期維持特別配當

- 對象契約: 6年 以上 維持된 有效한 契約

- 長期維持特別配當率: $1.0\% + (\text{經過年數} - 6) \times 0.2\%$

- 配當金額: 前保險年度末 解約還給金式 保險料積立金 × 長期維持特別配當率

③ 死差配當

- 對象契約: 1年以上 維持된 有效한 保險契約
- 死差配當率:

$$1 - \frac{\text{第2回 經驗生命表上 死亡率} \times (78\% \sim 88\%)}{\text{保險料 算出時 使用한 豫定死亡率}}$$

- 配當金額: 危險保險料 × 死差配當率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利差配當과 死差配當의 경우 各 生保社들은 配當率을 範圍配當率 內에서 自律的으로 決定할 수 있으나, 一部 外國社를 제외한 生保社들이 ① 保險商品의 社會性 ② 市場競爭力의 確保 ③ 會社別 公信力的 向上 維持 등의 問題때문에 모두 最高配當率을 採擇하여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事業初期에 基礎事業費用的 莫大한 投資가 必然的인 新設社들의 立場을 살펴보기로 하자. 〈표-2〉에서 보면, 1988年度부터 最近까지 設立된 新設社는 모두 25個社다. 그리고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은 株主構成의 性格에 따라, 便宜上 內國社(6個), 地方社(8個), 合作社(6個), 外國社(5個)로 分類區分하여 불려지고 있다.

〈丑-2〉新設社의 營業開始 現況(1992年 12月 現在)

區 分	會 社 名	營業開始年月
內國社	대 태 국 평 신 태 국 한 민 덕 한 신 국 한	1989. 10. 27
		1989. 11. 17
		1989. 12. 7
		1989. 12. 1
		1990. 3. 5
地方社	부 대 광 대 경 중 전 충	1990. 3. 23
	산 구 주 천 남 부 북 북	1988. 6. 3
		1988. 7. 1
		1988. 6. 15
		1988. 5. 26
		1990. 4. 19
		1990. 4. 18
		1990. 6. 30
合作社	동 양 배 네 나 동 양 배 네 피 트 코 오 룡 메 트 고 려 씨 엠 삼 신 울스 테 이 트 영 풍 메 뉴	1989. 8. 9
		1989. 8. 9
		1989. 9. 30
		1989. 9. 21
		1989. 11. 27
外國社	라 이 나 알 리 코 푸 르 덴 설 네 덜 란 드 프 랑 스	1991. 3. 18
		1987. 4. 23
		1987. 10. 2
		1991. 3. 4
		1992. 3. 31
		1992. 9. 15

資料：保險監督院刊, 1991年度 保險統計年鑑

新設社들은 契約量の 一定規模以上 確保로 “大數의 法則”의 適用範圍內로 早速히 接近하여 健全經營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事業初期에 營業組織을 堅固하게 構築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이를 이룩하려면 自然的으로 費用의 投資가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生保事業의 原論의인 事由로 인하여, 事業初期 狀態下에 있는 新設社들은 營業組織의 確固한 構築을 위하여 費用의 支出이 過多하게 되어 〈표-3〉에서와 같이 1991年度를 보면, 當期 缺損金이 360억원을 示顯하고 있으며 損失金의 一部를 移延處理한 移延資産이 4,08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新設社들은 일천한 營業 歷史로 아직經營의 기틀을 確立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여기에서 事業開始한 지 5년이 經過하면 6차 事業年度부터는 移延資産을 償却處理하여야 하는 追加負擔을 안게 되어 있다. 이런 負擔은 新設社의 앞날에 深刻한 問題를 던져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新設社들의 經營의 成敗는 이러한 問題를 어떻게 잘 解決해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丑-3〉 年度別 新設社의 當期損益 및 移延資産 現況

(單位：億圓)

會社區分 年度別	內 國 社		地 方 社		合 作 社		外 國 社		合 計	
	當期損益	移延資産	當期損益	移延資産	當期損益	移延資産	當期損益	移延資産	當期損益	移延資産
'88			△ 23	51			△ 47	10	△ 70	61
'89	△ 32	99	△ 26	211	△ 43	57	△ 58	14	△ 160	380
'90	△ 133	661	△ 98	577	△ 196	352	△ 89	13	△ 516	1,602
'91	△ 81	1,814	△ 67	1,231	△ 152	996	△ 61	40	△ 360	4,081

資料：保險監督院刊, 保險統計年鑑 (1988~1991年)

그런데, 이와같이 아직 經營基盤이 잡히지 않아 劣惡한 狀態에 있는 新設社들은 契約者配當도 義務配當이나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範圍配當率內에서 自律配當이란 方式에 따라 社會性, 競爭力, 公信用 등을 고려한 最高配當率을 採擇하여 이를 實施하고 있다. 이런 配當負擔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年度 3억원에서 1992年度 321억원(豫想額)으로 每年 幾何級數의 增加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新設社의 經營에 더욱 深刻한 問題로 대두되어 오고 있다.

(표-4) 年度別 新設社의 契約者配當金 增加 趨勢

(單位: 億圓)

區 分	內國社	地方社	合作社	外國社	合 計
'89		2		1	3
'90	2	21	2	2	27
'91	59	45	30	3	138
'92(豫想額)	175	61	79	6	321

資料: 各社 配當承認 申請資料를 集計 作成한 것임.

또 한편으로, 保險契約準備金이 利益計上과 契約者配當 財源의 確保에 어떤 影響을 미치는가를 過去 變遷過程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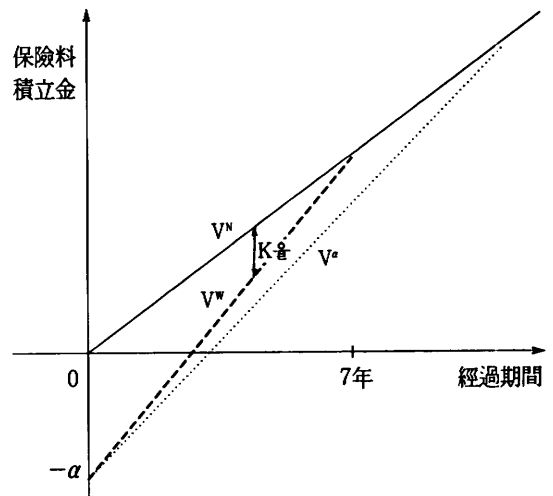
먼저, 契約者配當 財源의 確保를 決定짓는 것은 事業年度末 決算의 損益에 달려있다. 이런 損益은 負債로 計上되는 保險契約準備金의 積立水準에 크게 左右된다. 따라서 利益이 發生하였을 경우 이중의 一部分이 配當財源으로 確保되는 것이다.

既存社의 例에서 보면, 責任準備金은 事業初期부터 長期間(約20年以上)동안 營業組織등의 擴充을 위한 事業費用의 過多支出에 따라 發生된 損失部分의 負擔을 輕減시켜주기 위하여 Zillmer式 方

法으로 積立하게 하였다. 그러던 것이 政府가 1981年 3월에 示達한 “保險料 算出基礎 및 商品開發 指針 改正”에 따라 純保險料式을 原則으로 하되 10年償却 解約還給金式 積立方法으로 變更되었고 1987年 3月에는 純保險料式 原則에 7年償却 解約還給金式 積立方法으로 變更되어 現在에 이르고 있다.

準備金의 各 積立方法別 差異를 概略的으로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積立方法別 保險料 積立金



- 純保險料式(V^N)
- - - - 解約還給金式(V^W : 現行方式)
- 全期 Zillmer式(V^a)

α : 豫定新契約費

$$K_{\text{율}} = \frac{V - V^W}{V^N - V^W} \quad (V: \text{실제적립금})$$

물론, 既存社의 경우에도 會社別 損益의 差異가 있으므로 契約者配當金의 積立 및 利益計上에 있어 責任準備金의 積立充實化 程度에 따라 基準을

다르게 適用하고 있다. 예컨대, 1985年度에 純保險料式 責任準備金の 積立을 達成한 會社の 경우 에는 當期 純益의 90~93%를 契約者配當金으로 積立하고 殘餘金額을 當期利益으로 計上하도록 하였고 이를 達成하지 못한 會社は 契約者配當準備金を 積立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던 것이 1987年度에 와서는 이를 達成하지 못한 會社の 경우에도 前年度 K率(그림참조)을 基準으로 當期 豫定利益의 60% 이상을 純保式準備金에 充當토록 義務化한 後 殘餘金額의 70~93%를 契約者配當準備金으로 積立하고 다시 나머지 금액을 當期利益으로 計上토록 하였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既存社들의 契約者配當은 事業開始後 相當期間이 經過한 後에 이루어졌다. 이에 비하여 事業初期에 있는 新設社들은 現代 社會의 變化가 아무리 “패러다임·쉬프트(Paradigm Shift)” 現狀이라고 하지만, 〈표-3〉에서와 같이 累積損失金 및 移延資産에 대한 壓迫과 責任準備金の 積立率 및 大幅的인 增加勢를 보이고 있는 契約者配當金에 대하여 엄청난 負擔을 안고있다. 이러한 負擔은 앞으로 新設社의 經營에 그야말로 深刻한 問題를 던져주고 있음을 看過하여서는 안된다.

Ⅲ. 外國의 制度

1. 英 國

契約者配當의 歷史도 生命保險의 歷史와 같이 英國으로부터 源泉을 찾게 된다. 英國에 있어서 契約者配當은 1776年 Equitable社가 처음으로 決算을 行하고 그 結果 保險料를 10% 引下함과 同

時에 過去에 納入한 保險料의 10%를 支給한 것이 契約者配當의 嚆矢인 것이다.

그 當時 Price氏가 Northampton 生命表를 作成하고 1782년에 그 生命表를 使用하여 保險料를 計算하였던 바 그때까지 使用한 料率과 相當한 差異가 있었으므로 公平性の 見地에서 그때까지 納入한 保險料의 納入回數에 比例하여 保險金額을 增額하기로 하였다. 1782년에 發表된 配當率은 1781年度까지 締結된 契約에 대하여 經過年數 1년에 대하여 1.5%의 率이 採擇되었고 이것이 그 후 200年間 繼續된 定率保險金額增額方式의 始初이다.

19世紀 初期에는 그외의 配當方式도 採擇되어 그 方式이 多樣해지고 配當慣行도 相當히 定着하였으며 1826년에는 全 英國에서 營業하는 生命保險會社の 約 2/3가 어떤 形態이던 定期的인 配當을 行하고 있었다. 1900年代에는 保險金 增額方式, 利源式 配當, 其他方式 등으로 配當方式이 多樣化되어 있었으나 1950年代에 와서는 大部分의 會社가 保險金增額方式을 採擇하게 되었고 利源式 配當方式을 行하는 會社は 하나도 없게 되었다.

1954年과 1955年度에는 株式配當이 대폭 增加하고 株價도 上昇하여 生命保險會社 收支가 크게 好轉되어 有力 3個社가 從來의 慣習을 깨고 通常的인 保險金增額配當 이외의 追加 配當을 實施하였다. 生命保險會社가 이와 같은 制度를 採擇하게 된 理由는 長期繼續契約者에 대한 公平性の 問題이었으며 當時 크게 伸張한 投資信託 등과의 競爭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1966年에서 1967年에 걸쳐 特別配當의 새로운 傾向이 나타나서 保險金 支給時에 最終配當을 追加支給하는 會社가 増加하였다. 特別配當制度가

이와같은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 주된 이유는 投資信託業界가 變額養老保險을 가지고 生保市場에 參與하게 되고 이에 對應하여 生保業界도 變額保險을 積極적으로 販賣하게 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最終配當制度는 變額保險과의 對抗이라는 性格을 維持하면서도 死亡, 滿期 이외의 消滅時에도 支給하는 것으로 擴大되었고 그 配當額도 增加하여 1973年度까지 그 配當額이 長期契約인 경우에는 通常의인 保險金增額配當과 같은 水準에 到達하게 되었다. 1974年の 株式不況으로 最終特別配當은 相當히 減少되기도 하였으나 이제 特別配當은 保險金增額配當과 함께 綜合的인 配當制度를 構成하는 것으로 認識되고 있다.

2. 美 國

美國에서 最初로 契約者配當을 實施한 것은 相互會社인 Girard生命保險으로서 設立한지 9年이 經過한 1844년에 保險金을 1.25% 增額하는 方法으로 3年 經過한 有效契約에 限하여 配當을 實施하였는데, 이 配當은 大衆의 인기를 얻어 그 이후 設立된 會社는 大部分 配當을 實施하였다.

一般的으로 1863년까지 一律保險金增額式 配當과 既納入保險料比例 現金方式을 採擇하였는데, 各社의 配當 競爭으로 인해 自滅의 危險에 빠지게 되어 이 方法을 대신하여 利源別 配當方法이 登場하게 되었다. 利源別 配當方法은 1863年 New York生命이 처음으로 採擇하였는데, 이 方式은 科學的이고 相當히 公平性を 갖춘 方法으로서 各契約者가 納入한 保險料가 실제 消費된 費用을 超過하고 있는 比率에 따라 剩餘金이 割當되어야 한다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美國 Actuary協會 創

設者인 David Parks Fackler에 의해 創案되었으며 當時 많은 會社들이 이 方法을 採擇하였다.

한편, New York Equitable生命등 新設會社에서는 同一한 配當方法으로는 既存社와의 競爭上 不利하므로 据置式 配當方法(Tontine 配當)을 採用하여 인기를 얻기도 하였으나, 1906年 Armstrong 調査 結果, 据置式 配當方法은 禁止가 되고 利源別 配當方法이 美國의 代表的인 配當制度가 되었다. 그 후 特徵的인 것은 消滅時配當의 重要性이 浮刻되어 1955년에 이르러서는 뉴욕주내의 會社中 75%가 消滅時配當을 支給하거나 提案하였다. 現行 契約者配當 方法으로는 3利源 配當方法과, 實際經驗率을 適用하여 保險料 算出基礎를 再算出하여 保險料 差額을 配當金으로 割當하는 經驗保險料精算配當 方法이 있으며, 配當方式은 保險年度式을 採擇하고 있다. 또한 配當率 決定은 各社 自律的으로 實際運用率을 基準으로 決定하는 등 政府의 規制없이 自律的인 方法으로 施行하고 있다.

3. 日 本

日本の 近代의 生保社의 始祖라 할 수 있는 日東生命에서는 契約者配當이 實施되었는데, 이는 日東生命이 美國의 New York生命을 模倣하여 相互組織한 相互會社이므로 配當方式도 利源別 配當方式으로 實施하였다. 1881年 明治生命에서는 一部商品에만 契約者配當을 實施하였는데, 이 契約者配當金은 前配當期(配當期는 每 4年마다)後 納入된 保險料가 配當을 하지 않은 保險料를 超過하는 部分을 配當期에 정하는 一定比率로서 利殖한 것이다. 1889年 相互會社인 日本生命에서는 비로소 一定基準이 되는 全 保險種類에 대해서 保險料

積立金比例式으로 配當을 實施하게 되었다. 日本의 全盛期였던 1870~1930年代에는 契約額과 資産이 增加하여 많은 利得을 취하게 됨에 따라 여러 配當方法으로 配當을 實施하게 되었는데, 한편으로는 더 合理的인 方法이 要求되면서 利源別 配當方法이 登場하게 되었다.

契約者配當의 近年의 變遷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50年: 2利源配當
- 1957年: 3利源配當
- 1971年: 消滅時特別配當의 導入
- 1974年: 消滅時特別配當을 解約還給金까지 擴大 支給
- 1976年: 死差配當 男·女 區分
- 1986年: 消滅時特別配當制度 改正

이와 같이 日本은 典型的인 利源式 配當과 消滅時特別配當 制度를 採擇하고 있고, 配當時期는 保險年度式을 採擇하고 있으며 配當率 決定은 各社가 當事業年度の 利源別 損益을 展望하여 配當率의 試案을 作成하여 大藏省에 報告하면 大藏省에서 配當率을 調整하여 決定한다. 즉, 政府規制下에 業界가 統一的인 方法으로 施行하고 그 範圍內에서 配當率 差等化를 認定하고 있다.

IV. 契約者 配當制度에 대한 提言

最近 우리나라 保險市場은 對內外的 開放과 함께 生保産業의 경우에도 自律競爭 範圍가 점차 擴大되어 가고 있는 實情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契約者에 대한 權益保護가 한층 더 強調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保險産業의 質的인 經營의 重

要性이 더욱 強調되고 있음은 不問可知이다.

한편, 生保市場은 過去에는 既存社의 寡占體制이었으나 다수 新設社들의 市場參與로 自由競爭體制로의 轉換이 諸 部分(즉, 商品, 手當, 配當 등)에서 進行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契約者配當 競爭側面에서 보면 契約者の 權益保護와 生保産業의 健全한 發展을 위한 配當의 自律化는 長期的인 眼目에서 推進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러나 現實으로 保險營業 및 財務管理에 상당한 副作用을 招來할 可能性이 潛在되어 있음도 事實이다.

여기서 不過 3~4年前에 設立되어 營業을 始作한 新設社들의 경우를 보자. 이들은 健全經營의 基를 早期에 確固히 하고자 營業基盤의 構築과 專門人力의 確保 및 開發에 온 心血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初期固定費등 事業費用의 投入이 過多한 것은 當然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事業費의 過多支出은 累積인 現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新設社의 經營上 큰 負擔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狀況에서 契約者配當이 既存社와 同等한 率로 施行되고 있다는 것은 理論의 妥當性이 缺如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經營의 不實化 危險을 加重시켜, 保險會社의 本來의 基本的 義務인 保險金의 支給能力마저 危殆롭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現 配當制度가 그대로 持續된다고 할 경우 新設社들은 다음과 같은 事由등으로 앞으로 갈수록 赤字幅이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머지않아 經營上 심각한 問題로 表面化될 것이다.

첫째, 累積되는 費差損

둘째, 契約初期(1年未滿)解約으로 인한 解約損

세제, Zillmer식과 같은 配慮가 없는 責任準備金의 過多積立

네제, 移延資産의 償却 財源 및 配當所要額의 確保 등

前述한 外國의 例에서 보면, 英國, 美國, 日本 등은 契約者配當을 約 100~200年 前부터 實施하였다. 그러나 當時 이들의 保險會社는 다소의 利潤을 追求하는 株式會社의 形態가 아니고, 모두 相互會社의 形態였으며, 配當의 實施도 營業開始後 約 10年以上 經過한 後에 이루어 진 점을 注目해 둘 必要가 있다.

이와 같이 諸般 事情을 살펴볼 때, 新設社들이 配當의 競爭의 要素를 가지고 契約確保競爭을 既存社와 別인다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물론, 現在 新設社들이 안고 있는 累積損의 解消, 責任準備金積立의 充實化, 契約者配當財源의 確保등의 問題는 自身들이 早速히 해결해야 할 課題들이다. 결국, 營業基盤을 시급히 確固하게 構築하고 經營의 效率化를 통하여 損益分岐點의 到達時期를 앞당기

도록 意慾的인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本稿에서는 現在 新設社가 안고 있는 諸般 經營上的 問題들 가운데 契約者配當에 대하여서만 提言을 하고자 한다.

지난번 政府는 위에서 言及한 諸 問題들을 고려하여 無配當 保險商品의 販賣를 許容한 바 있다 (財務部生保 22330-66, '92. 7. 23). 이의 販賣範圍는 保障性保險, 傳統的 養老保險 및 其他 財務部長官이 認可하는 保險에 限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모든 生保社들이 1992年 9월부터 無配當 保障性保險을 開發 販賣하고 있다. 그런데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保險需要層의 니드는 貯蓄性保險에 치우쳐 있음으로 이에 問題解決의 期待를 걸기에는 無理가 있다.

이것은, 無配當 保障性保險의 그간의 販賣實績 動向을 보면 곧 알 수 있다. 물론 販賣期間이 얼마 안 되지만 收入保險料 基準으로 볼 때 <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豫想外로 低調한 편이다. 그래서 無配當保險의 導入效果에 대한 評價는 아직 이르

<표-5>

年度別 貯蓄性保險의 M/S 現況(收入保險料 基準)

(單位: 億원, %)

區 分 年度別	既 存 社					新 設 社					合 計				
	貯蓄性	%	保障性	%	計	貯蓄性	%	保障性	%	計	貯蓄性	%	保障性	%	計
'87	68,507	93.9	4,425	6.1	72,932	5	55.6	4	44.4	9	68,512	93.9	4,429	6.1	72,941
'88	89,876	97.0	2,763	3.0	92,639	1,118	97.0	34	3.0	1,152	90,994	97.0	2,797	3.0	93,791
'89	108,323	96.9	3,438	3.1	111,761	6,767	98.1	129	1.9	6,896	115,090	97.0	3,567	3.0	118,657
'90	134,897	96.5	4,841	3.5	139,738	20,284	98.0	415	2.0	20,699	155,181	96.7	5,256	3.3	160,437
'91	158,213	95.4	7,577	4.6	165,790	27,050	96.7	931	3.3	27,981	185,263	95.6	8,508	4.4	193,771

註: ① 保障性保險은 生存時 支給되는 給付金の 合計額이 既納入保險料를 超過하지 아니하는 保險.

② 新設社는 內國社, 地方社, 合作社 및 外國社를 總稱함.

資料: ① 保險監督院刊, 保險統計年鑑 (1987~1991年)

② 生命保險協會刊, 生命保險統計年報 (1988~1989年)

다고 하겠지만, 現在로서는 당초의 效果를 거두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豫想된다.

〈丑-6〉 無配當保險의 販賣現況

(單位: 億圓)

區 分	既 存 社	新 設 社	合 計
無配當保險	74	22	96
全 商 品	44,648	9,347	53,995

註: '92. 9~11(3個月) 各社 收入保險料 暫定 集計值

따라서, 新設社들에게는 無配當保險을 全面的으로 擴大 實施토록 해 줄 것을 提言하는 바이다.

그럼으로써, 新設社들에게는 會社別로 經濟的 與件, 契約者의 니즈, 會社의 運用能力등을 감안한 商品의 開發意慾을 鼓吹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商品의 競爭力을 提高시켜, 契約者에 대한 서어비스 向上에 크게 寄與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서, 配當能力이 취약한 新設社들은 自律的인 判斷에 따라, 無配當保險의 販賣에 注力하게 되어, 자연적으로 配當에 대한 負擔이 減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結果的으로는 累積損을 縮小시키고, 競爭力을 提高하여 빠른 期間內에 安定된 經營基盤을 갖추고 效率的인 黑字 經營體制로의 進入에 한발짝 다가서게 될 것이다.

V. 맺는말

國內 生保社는 最近 長期的인 株式市場의 沈滯

와 急變하는 金融環境등으로 어려움에 直面하고 있다. 더우기 設立된지 5年未滿 新設社가 25個社나 되어 이들 新設社들이 自生力을 가지고 安定基盤을 構築하는 것이 生保産業 發展의 重要的인 課題가 되고 있다.

만일, 이들중 經營이 不實하게 되어 運營이 困難한 會社가 생길 경우를 假定해보자. 우리나라의 國民들은 全體的으로 볼 때 아직까지 保險에 관한 認識水準이 保險先進國에 비하여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狀況이다. 이런 狀況에서 保險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게되어, 결국 類似保險圈 및 다른 金融圈으로 고객을 상당히 빼앗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不實하게 된 會社만의 問題가 아니라 生保業界 全體에 影響을 끼치는 重要的인 問題인 것이다.

한편, 契約者의 權益保護와 生保發展을 위해 契約者配當의 擴大 및 自律化의 推進은 바람직한 方向이지만 新設社들이 이를 受容하기는 어려운 實情이므로 新設社들이 自律競爭構造를 갖추고 財務構造의 健全化와 擔保力 確保가 一定水準 以上 到達할 때까지 新設社에 대한 細心한 政策的인 配慮가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즉, 無配當保險의 完全한 開放으로 配當能力이 없는 新設社들이 對外的으로 營業 競爭力을 提高하고 對內的으로는 責任經營을 具現토록 해 주어, 早期에 損益分岐點에 到達하여 準備金積立의 充實化 및 內部留保가 充足하게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生保産業은 더욱 安定된 基盤위에 自律競爭의 土臺가 마련될 것이다.